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1
----------	-----

제출년월일 : 2019. 0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 관할 군부대의 명칭 변경 및 조례의 상위법령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명확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평창군 비상대비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며, 특히, 군·경합동상황실의 구성을 조례에 명시하여 관련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군기무부대”를 “국군 제557-5 안보지원대”로 변경하여 변경된 군부대 명칭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7호)
- 나. 종전의 “담당과장, 제1670부대 1·3대대 작전업무 담당과장”을 “담당과장(병중사태), 제1670부대 1·3대대 작전과장(을중사태 이상)”으로하여 운영기준을 명확화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제4호)
- 다. 종전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을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으로 변경하여 변경된 상위법령 명칭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2조제6항제1호)
- 라. 종전의 “향토예비군”을 “지역예비군”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명

칭을 동일화 하고자 함(안 제3조제5호 가목)

마. 종전의 “홍보”를 “홍보, 군·경 합동상황실”로 변경하여 군·경 합동
상황실 구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대상 아님(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기획감사실-6397, 2019.05.21.)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기획감사실-6397, 2019.05.21.)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주민복지과-36407, 2019.05.24.)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으로, “**사고가 있**”을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국군기무부대**”를 “**국군 제557-5 안보지원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담당과장, 제1670부대 1·3대대 작전업무 담당과장**”을 “**담당과장(병중사태), 제1670부대 1·3대대 작전과장(을중사태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을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5호가목 중 “**향토예비군**”을 “**지역예비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홍보**”를 “**홍보, 군·경 합동상황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 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 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 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u>위원</u> <u>중에서</u> 호선하고 의장이 <u>사고가</u> <u>있을 때</u>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협회의 위원은 다음 <u>각호</u>의 자로 한다.</p> <p>1. ~ 6. (생략)</p> <p>7. <u>국군기무부대</u> 지역담당관</p> <p>8. ~ 10. (생략)</p> <p>③협회의에는 다음 <u>각호</u>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 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작전담당 간사 : 평창경찰서</p>	<p>제2조(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 ----- ----- ----- ----- ----- <u>위원</u> <u>중</u> ----- <u>불가피</u> <u>한 사유로</u> 직무를 수행할 수 없 -----.</p> <p>②----- <u>각 호</u>-----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국군 제557-5 안보지원대</u> -- -----</p> <p>8. ~ 10. (현행과 같음)</p> <p>③----- <u>각 호</u>-----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p>

작전업무 담당과장, 제1670부대 1·3대대 작전업무 담당과장

5. (생략)

④·⑤ (생략)

⑥ 협의회는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의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평창군 방위협의회

2. (생략)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가. 향토예비군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생략)

6. (생략)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평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 담당과장(병중사태), 제1670부대 1·3대대 작전과장
(을중사태 이상)

5.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

2. (현행과 같음)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 지역예비군-----

나.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인이
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
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
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
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편
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
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
으로 구성

② ~ ④ (생략)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
의회 의장이 정한다.

----- 홍보, 군·경 합동상

황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필요-----

-----.

[붙임 1]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예비군법 시행령

제33조(방위협의회의 종류)

- ①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나눈다.
- ② 지역방위협의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각급 출장소를 포함한다) 단위로 설치·운영하고, 직장방위협의회는 직장(제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 2. 20.>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상 조치가 불필요하며 비용이 발생치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연락처	(033) 330 - 2210